

강 령

1. 전 문

대한민국 건국 72년 만에 행정부 입법 사법부가 북한 괴뢰집단을 돕는 종북 주사파 좌익세력에 의해 완전 점령되고 헌법 파괴와 대통령 불법 탄핵 등 국가의 안위와 질서가 무참하게 무너지는 변란이 발생했다.

자유세계 서방 국가들은 미국과 연합하여 국가안보를 굳건히 하며 그 바탕 위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좌익세력에 의해 나날이 파괴 일로를 걸어왔고, 그 결과 국민은 갈수록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정부는 국민들을 속이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이 발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실업자가 급증하고, 가족 집단 자살이 속출하고, 경제범죄가 늘어나고, 투자의욕을 잃은 기업은 한국을 떠나 해외로 근거를 옮기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는 사회주의 통제 경제로 대체되고, 악성노조의 폭력에 기업은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

작금의 주사파 종북 정권은 국가안보의 초석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 하고, 적과 한편이 되어 동맹국인 미국에 다항하고, 군을 축소하고 방어전선을 파괴해 대한민국 국군을 약화시키고, 군과 국민 그리고 학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주입하

고 하고 있다.

주사파 중북 정권은 국민을 적대시하면서 온갖 세금 폭탄과 벌금을 부과하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만들어 북한 괴뢰집단에 아낌없이 퍼줌과 동시에 과거의 간첩과 빨치산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며, 과거의 총신을 역적이라 하고, 과거의 역적을 총신이라 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질서는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고 걱정하는 국민은 그 수가 아직 소수이며, 그중에서도 나라를 위기와 절망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깨어 있는 국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가 파괴세력을 적으로 규정하는 과단성 있는 정치 세력이 없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려는 정당은 여러 개 존재하고 있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반국가세력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수호하고자 하는 순혈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없다.

정당은 사상적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애국집단이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정당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형성한 혼성집단에 불과하다.

자유당은 하나의 이념으로 뭉친 단일이념 정치단체이다.

2020년 총선에서 정통 우파정당이 분열되고 공천과정을 통해 좌익 정당으로 탈바꿈한다면 대한민국은 입법과정을 통해 적화될 수 있다는 급박한 우려가 있다.

정치가 국가의 체제를 바꿀 수 있고, 정치만이 그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창당대회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조차 모를 만큼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깨어 있는 극소수의 순수한 애국 국민들이 함께 모여 오늘의 자유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어떤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당한 국민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유당을 창당하기에 이른 애국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이다.

2. 강령

제 1 조 (헌법 수호 · 국가 정체성 확립과 선진 정치)

*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산업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부국강병의 선진화를 이룩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켜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지배하는 정치 경제 선진국을 만든다.

제 2 조 (국방, 외교, 안보가 튼튼한 나라)

* 주적 북한과는 확실한 선을 긋고, 한국-미국-일본과 군사동맹 및 우호관계를 복원, 강화한다. 국방 의무를 신성시하고 군·경예우 법을 입법화하여 애국심을 고취한다.

제 3 조 (대한민국의 국민을 우선시하고, 성실 · 근면한 사람이 잘사는 나라)

* 북한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대한민국의 절대 빈곤층에 투자한다. 성장 없는 복지, 나태함을 조장하는 복지로는 절대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제 4 조 (세계화시대 국가 정부 기관의 시스템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

* 국가 정부 기관을 시스템화하여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한다. 세금을 적게 걷고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 운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

제 5 조 (철저한 시장경제원칙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기업과 국민들의 상속세와 증여세 등 개혁 및 폐지를 통하여 시스템이 운영하는 자유시장경제가 되도록 한다. 노동시장에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노동폭력을 근절한다.

제 6 조 (교육의 자율화와 인재 양성)

* 교육의 초점을 국제 경쟁에 두고, 규제와 간섭을 철폐한다. 선진화와 첨단 지식기반사회를 위해 인재 양성과 발굴에 국가가 앞장선다.

제 7 조 (원칙이 통하는 인격 사회와 품격 높은 문화강국)

* 품위와 매너를 중시하는 정신적인 귀족문화를 창달한다. 집단폭력을 근절하고 기준과 원칙이 준수되는 인격 사회를 만든다.

제 8 조 (국가 안보와 관련된 과거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역사 바로 세우기)

* 광복과 건국 초기부터 있어 온 북한과 좌익들의 공작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올바른 역사와 국가관을 국민들에게 고취하도록 한다.

자유당 당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자유 대한민국 수호 '자유당'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우리 자유 대한민국 수호 '자유당'의 목표는 역사를 뒤로 돌리는 종북 좌익들의 파괴공작과 세도와 폭력이 지배하는 무법천지를 중단시키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여 국민이 행복하고 안보가 튼튼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 (조직)

- ① 자유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 ② 중앙당은 수도에 두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도에 둔다.

제2장 당 원

제4조 (당원)

-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찬동하는 국민은 누구든지 당규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 ②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입당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 한자리까지 기재를 허용한다.
- ④ 입당원서는 원본 및 팩스제출 및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입당을 인정한다.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공직후보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당의 정책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당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른 의무

2.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4.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할 의무
6. 당규에 정하는 당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 (당비)

- ① 당비는 중앙당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시·도당에 배분한다. 단, 당비의 배분비율과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 ③ 누구든지 다른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대납으로 납부한 자는 당직 및 공직후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④ 구체적인 당비의 액수 및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선거와 당원의 의무)

- ① 당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당원은 당직자 선출과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

- ① 입당, 복당, 전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당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 (당원관리)

- ① 시·도당은 당원의 명부작성 권한을 가지며, 당원명부를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중앙당에 송부하여야 한다. 명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중앙당은 당원명부를 관리 운영한다.
- ③ 당원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대 의 기 구

제3장 전국대의원대회

제10조 (지위와 구성)

-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관이다.
-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대회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고문
 3.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4.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5. 중앙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6. 중앙당 각 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정무직 당직자와 사무직 당직자
 7. 시·도당 대표자 및 사무처장
 8.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9. 시도당 대표가 추천한 권리당원 중 중앙당 대표나 중앙운영위원회가 인준한 대의원으로 그 수는 각각의 시도당의 권리당원 중 5% 이내로 한다.

제11조 (권한)

- ① 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당헌 추인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추인
 3. 당대표 선출
 4. 원내대표 선출
 5.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
 6.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청된 안건의 의결
 7.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 ② 전국대의원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있다.

제12조 (소집)

- ①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3년마다 당대표가 소집한다.
- ② 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대의원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1월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③ 당대표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제13조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중앙운영위원회

제14조 (지위와 구성)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고문
 5. 사무총장
 6. 정책위원회의장
 7. 당 소속 국회의원
 8. 시·도당 위원장
 9. 당대표가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약간 명
- ③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당대표가 되며, 당대표 궐위 시 최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15조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2. 당헌 개정과 강령 및 기본정책변경, 이 경우 차기 전국대의원대회 추진
 3. 당규의 제정 및 개폐
 4.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5.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7.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8.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9. 주요정책 관련 안건의 당원투표 부의
 10. 원내대표, 사무총장,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선출
 11. 제14조 제2항 중앙운영위원 선임권
 12.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합당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의 수임
 13.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임한 원내대표 선출 및 원내대표 궐위시 선출 의결
 14.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의결권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전국대의원대회 불가피한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제 11조 제1항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14호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 ⑤ 중앙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고위원회가 그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제16조 (소집 등)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이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절 당 대표

제17조 (당대표)

- ① 당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한다.(당대표는 창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대로 선출할 수도 있다.)
- ②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하며 중앙운영위원회 대표가 된다.
- ③ 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각종 회의 소집 및 주재
 2. 최고위원 및 고문,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원내대책회의 위원 추천
 3.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4. 당무 전반에 대한 집행·조정·감독
 5. 중앙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 ④ 당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절 최고위원회

제18조 (최고위원)

- ①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최고위원회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 ③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중앙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5.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6.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7.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8. 당무전반에 관한 조정, 감독
 9.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 10.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 11.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에 대한 창당 승인 또는 사고당·사고지역당원협의회 판정
- 12.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 ④ 중앙운영위원회 불가피한 상황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최고위원회는 제15조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최고위원회의 운영 등의 세부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고문)

- ① 당대표는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당대표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인사위원회)

- ① 사무직 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하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사무총장
 - 2. 정책위원회의장
 - 3. 당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는 위원
-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대표가 중앙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4절 사무처

제21조 (구성)

-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산하에 인사위원회등과 필요한 국을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총장 등)

- ①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집행을 통할하고 당무 집행 전반에 관하여 당직자의 복무상황을 관리한다.
-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 ③ 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한 자가 그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 ④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 (당직자의 구분과 임면)

- ① 당직자는 정무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정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급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관련 법인 등의 국장급 이하 당직자를 말한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 사무직 당직자는 당대표가 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명하되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⑤ 당직자의 구분, 인사, 업무분장, 직급, 임면, 보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정책위원회

제24조 (정책위원회 구성)

- ①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정책위원회 권한)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의 실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입안
2. 법률안의 연구 및 심의
3. 당 정책에 대한 심의
4.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5. 당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6. 각급선거 공약개발
7. 기타 당 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6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 ① 정책위의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집행을 통할한다.
- ② 정책위의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 ③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정책위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정책 연구소)

- ① 자유당의 이념과 정책, 전략에 대한 연구 및 당원의 정치지도자 교육등을 위하여 별도의 재단법인 형식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 ② 연구소 소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이사장은 당대표가 지명한다.
-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소의 이사회는 이사장의 추천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7인 이하로 둔다.
- ⑤ 연구소의 운영 및 구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28조 (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9조 (권한)

의원총회는 다음각호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① 당의 일상적인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와 의결
- ② 입법관련 주요정책, 국회에 제출한 법안 및 논의할 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 ③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심의
- ④ 정당법 제 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제명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에 건의 의결
- ⑤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 결산 심의
- ⑥ 기타 원내 대책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0조 (국회의원 제명)

- ① 국회의원 제명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1조 (지위와 권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 업무를 총괄한다.

제32조 (선출 및 임기)

- ① 원내대표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가 불가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원내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직을 유지한다.
원내대표의 궐위 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③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 (원내 대책회의)

- ① 당의 원내 활동에 대한 대책 협의, 조정을 위한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 ②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 원내대표 및 당대표가 지정하는 10인 이내 최고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로 한다.

제34조 (실무기구)

- ① 원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 ②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지방조직

제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제35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지위와 구성)

-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대의기관이다.
-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대표자
 2. 시·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3. 지역구 국회의원 및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4. 시·도당 사무처장

제36조 (시·도당 대의원대회 권한)

-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위원장 선출
 2.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 ②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제①항의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다.

제36조의2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

- ① 정기 시·도당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시·도당 대표가 소집한다. 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기준 45일 전까지 정기사·도당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 ②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시·도당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시·도당 대표가 1월 이내에 소집한다.
 2. 중앙당 대표가 요구하는 경우

제2절 시·도당 위원장

제37조 (시·도당 위원장)

- ①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시·도당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 ②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총괄하며 시·도당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도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승계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38조 (시·도당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절 시·도당운영위원회

제39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써 의장은 시·도당 대표자가 된다.

②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2. 사무처장
3.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4. 시·도의회 의원 및 자치구·시·군 의회 의원
5. 시·도당 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0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절 시·도당의 사무처

제41조 (시·도당의 구성)

-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두되, 사무처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사무처 사무국장 및 당직자 약간 명을 시·도당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장 예산과 회계

제42조 (경비)

당의 경비는 당비, 기탁금, 정당보조금 및 부대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43조 (당비)

당비의 금액, 납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4조 (예산과 결산)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제45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12월 31일 종료한다.

제46조 (예산의 편성과 확정)

①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전년 10월 31일까지 각 집행부서로부터 예산안을 제출 받아 예산안을 작성하고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예산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써 편성 및 확정된다.

제47조 (결산과 정당보조금 사용내역의 공개)

예산결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결산과 정당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48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확인, 검사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9조 (회계감사)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50조 (세부규정)

예산과 결산,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공직선거

제51조 (선거대책기구)

① 각급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대책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

① 각급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각급공직선거후보자 공모

2. 각급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3. 각급공직선거후보자 결정,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 (후보자 추천)

① 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다만, 불

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체적인 추천방식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5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제56조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은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시·도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할 수 있다.

제57조 (비례대표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비례대표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선출은 해당 시·도당이 수행하되, 최종 추천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9장 보 칙

제58조 (등록취소 또는 자진 해산 시 잔여재산처분)

당이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당시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별도 위임한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청산업무를 관장한다.

제59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 또는 자진해산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그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중앙당 대표가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당의 해산사유와 그 절차, 청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 (대표자 변경과 합당시의 법정부채과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

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필요한 인장의 종류와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 (당규의 제정 등)

당헌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62조 (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63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의 변경)

당헌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은 당의 사정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후 3개월의 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의결정족수)

당헌에 별도의 의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안건에 대한 의결에 있어서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한다.

제65조 (시·도당 창당승인 및 취소)

① 시·도당 창당 승인 및 취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의 강령, 기본정책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2. 당의 당헌, 당규에 반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3. 당에 해가 되는 시도당의 행위가 있을 때
- ③ 시·도당 창당 승인 및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 (의결방법)

① 대의기관의 의결과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의결은 서면이나 대리임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 대의기관의 의결은 「문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면,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67조 (전자회의와 전자투표)

당의 회의 및 의결은 안건을 제출하는 단위의 결정에 따라 전자회의 또는 온라인투표 및 모바일투표 등 전자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당헌은 당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당초기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폐)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치적 강령과 당헌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정신 및 골격과 건전한 상식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령과 당헌을 변경하고, 당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3조 (경과조치 및 특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식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